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Subject: News Final of MEPC 73

제 7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이하 “MEPC 73차”라 한다)가 런던 IMO 본부에서 2018년 10월 22일에서 26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MEPC 73차 회의결과와 관련하여, 1차 소식지 News Flash로 주요 의제에 대한 요약사항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 2차 소식지 News Final에서는 결정사항을 포함한 주요의제 회의결과 및 상세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MEPC 73차에서 결정된 각종 MARPOL 협약 및 관련강제협약의 개정안들은 2020년 3월 1일부터 발효되며, 각종 결의서로 채택된 지침서는 즉시 효력을 지니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 BWM 협약의 발효조건은 2016년 9월 8일 만족된 상태이며, 2017년 9월 8일 이후로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협약의 발효일자 이후에 건조된 협약적용 대상 선박들은 D-2 성능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BWMS의 탑재가 요구되며, 협약의 발효일자 전에 건조된 선박들은 이전 IOPP 정기검사의 완료날짜에 따라 협약발효일 후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정기검사 시까지 해당기준의 만족이 요구됩니다.

- 1.1 평형수 처리장치 IMO 기본승인 1건
- BIOBALLAST 1000 (Germany)
- 1.2 평형수 처리장치 IMO 최종승인 1건
- Envirocleanse in Tank™ BWTS (Norway)
- 1.3 MEPC 73차에 보고된 정부형식승인 완료된 평형수 처리장치
- 신규형식승인(1건): BIO-SEA® B BWMS(France), 동 형식승인은 BWMS의 형식승인을 위한 지침서 (G8, Res.MEPC.174(58))에 따라 승인받음.
- 1.4 밀봉된 탱크의 영구평형수
- BWM 협약의 조문 3.2(f)에 따른 영구평형수의 적용에 관한 명확화를 요청하는 제안사항이 다음의 3가지 가능한 적용 및 해석과 함께 제출됨:
 - .1 선내 평형수 배출지점이 맹판 또는 제거 가능한 Spool Piece 등을 통하여 차단되어야 함. 이러한 경우, 검사 및 증서발급, BWMP 및 BWRB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2 상기 .1항의 적용과 함께, 선박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IBWM 증서의 발급이 요구되지 아니함. 대신 주관청에서 발급한, 면제상세를 언급하는 ‘Statement of Compliance’의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발급이 요구됨; 및

.3 상기 2가지 적용은 협약 조문 3.2(f)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문에 따른 밀봉된 탱크는 평형수 배출관을 지니지 않아야 하며, 동 탱크내의 평형수는 해상 또는 수용시설로의 배출이 불가능함.

- 논의 후, BWM 협약의 조문 3.2(f)의 통일해석 개발 필요성에 대한 지지 및 밀봉된 탱크의 정의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MEPC 73차는 PPR 전문위원회로 동 건에 관한 통일해석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음.

1.5 최초검사 시, 개별 BWMS의 D-2 기준 만족여부에 대한 검증

- MEPC 70차는 개별 BWMS 장비의 Commissioning과 함께 BWM 협약의 D-2 기준의 준수여부가 검증되어야 함에 동의하였으며, MEPC 72차는 MEPC 73차에서의 완료를 위하여 동 검증방법에 대한 의견을 관심있는 당사국들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이와 관련하여, 평형수의 지표 및 상세분석 측면에서의 처리된 평형수를 분석할 수 있는 통일되고 검증받은 방법론이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BWMS의 강제적 D-2 기준만족 여부의 검증은 경험축적기(Experience Building Phase)를 통한 충분한 데이터와 경험이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샘플링 방법 및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는 제안사항이 제출됨.

- 논의 후, 동 검증은 본선에 설치된 BWMS의 효과적인 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이러한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MEPC 73차는 동 검증절차를 경험축적기의 일부로 간주하자는 상기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다음의 사항을 언급하는 회람문서를 승인하였음:

.1 샘플 평형수가 본선 주입단계 및 처리장치를 통한 처리 후에 수집되어야 함. 샘플 평형수는 G2 지침서에 따라 채집되어야 함.

.2 대표샘플은 D-2 기준에 언급된 모든 종류의 크기에 대하여 BWM.2/Circ.42/Rev.1의 Table 3에 언급된 **지표분석(Indicative Analysis)**을 통하여 분석되어야 함.

.3 자가모니터링 파라미터(Self-Monitoring Parameters)들 또한 BWMS의 시스템 설계 제한(System Design Limitation)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모든 센서와 관련 장비들이 확인되어야 함.

- 상기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전히 BWM 협약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MEPC 73차는 관심있는 당사국에게 BWM 협약의 E-1.1.1 규칙의 개정안을 다음회의에 제안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이와 관련하여, MEPC 73차는 상기 검증절차가 협약의 B-3 규칙에 따른 현존선박에 대한 장비 설치 후의 Commissioning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지지하였으며, III(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전문위원회로 현존선박에 대한 Commissioning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사항이 HSSC 검사지침서에 언급될 수 있도록 이를 최신화할 것을 지시하였음.

1.6 국제선박평형수 협약증서 양식의 개정

- A-4 규칙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용된 면제, A-5규칙에 따른 동등물 규정, B-3.6에 따른 항만수용시설 및 B-3.7에 따른 기타 승인된 방법 등과 같이 현행의 BWM 협약에 따른 평형수 관리방법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IBWM 증서상에 동 방법들을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모든 기타의 평형수 관리방법을 반영하기 위한 IBWM 협약증서 양식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음.
- 논의 후, 증서양식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가 있었으나 개정안 상세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검토가 요구됨을 고려하여, MEPC 73차는 관심있는 당사국들에게 추가 의견을 차기 MEPC 74차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1.7 비상조치에 따른 평형수 관리계획서의 최신화

- 지난 MEPC 71차는 항만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미준수 평형수 배출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비상조치에 관한 BWM.2/Circ.62를 승인하였으며, 이 때 당시 본선의 평형수 관리 계획서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들이 언제 언급되고 승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 MEPC 72차는 비상조치가 강제사항인지 여부와 어떠한 요소들이 BWMP 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관심있는 당사국에게 비상조치에 관련된 사항들이 언제 본선의 BWMP 상으로 언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MEPC 73차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MEPC 73차는 다음과 같은 비상조치에 관련된 평형수 관리계획서의 관리에 관한 제안 사항들을 고려하였음:
 - .1 BWMP 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비상조치의 요소(BWM.2/Circ.62상에 언급된 방법론, BWMS의 고장에 대한 대처방안, BWMS를 통한 평형수 교환, 항만 또는 육상기반 비상조치 및 기국, 항만당국의 비상조치에 관한 지침 등)들에 대한 분석; 및
 - .2 산업계 회원으로부터 제시된 탱커선의 평형수 비상조치 지침.
- 논의 후, BWMP 최신화의 시기와 관련하여, 동 최신화는 D-2 기준의 이행에 따라 BWMP가 개정될 때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최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을 고려하여, MEPC 73차는 BWMP내로 비상조치에 관한 정보의 통합시기는 각 회원국들이 결정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음.
- 또한, MEPC 73차는 BWM 협약의 비상조치(Contingency Measures, BWM.2/Circ.62)에 관한 사항을 BWMP 상에 반영하기 위한 G4 지침서(the guidelines for ballast water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ballast water management plan)의 개정안을 채택하였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음. 이와 관련하여, 비상조치가 반영된 BWMP의 최신화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그러므로 별도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음. 하지만, 이의 최신화에 대한 시기는 주관청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함.

1.8 평형수 펌프의 조작상세 기록에 관한 추가제안

- MEPC 72차는 평형수 펌프의 조작상세 및 GPS를 이용한 선박 위치의 기록을 통하여 평형수 교환 및 처리를 모니터하자는 제안사항을 고려하였으나,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 및 잠재적인 추가장비 탑재에 관한 우려를 고려하여 MEPC 73차로 평형수 펌프의 조작상세 기록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한 New Output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평형수 교환 및 처리장치의 제어에 관련된 평형수 보고양식 상에 식별된 불만족 평형수의 사례에 관한 정보와 함께 전자 평형수 데이터 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평형수 펌프가 작동된 지리적 위치, 날짜 및 시간이 기록되어야 함을 언급한 추가 제안사항이 제출되었음.

- 논의 후, 현행의 평형수 기록부가 항만국통제 검사에 요구되는 모든 필수적인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MEPC 73차는 동 건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에게 차기 회기로 신규작업항목(New Output)을 제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1.9 BWMS의 형식승인에 관계된 System Design Limitation

- MEPC 73차는 BWMS 및 이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설계제한(System Design Limitation)에 관한 회람문서 초안을 승인하였으며, 동 문서는 시스템 설계제한에 대하여 BWMS Code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 및 동 기술과 관계하는 잠재적인 시스템 설계제한 사항과 같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

1.10 평형수 관리에 관련된 신규작업(New Work Programme) 제안 (Agenda 15)

- MEPC 73차는 다음의 신규작업 제안에 대하여 고려하였음:

.1 BWM 협약의 개선 및 일관된 이행을 위한 안전, 기술, 운전 그리고 문서 검토 및 개정의 효율적인 식별 및 향상, 및 BWM 협약을 준수함에 있어서 기술 및 운항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BWMS 협약의 필요 개정사항 개발;

- 동 제안에 대한 지지가 있었던 반면, BWM 협약의 조문 9의 개정은 오직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에 따라 제출된 데이터를 고려한 경험축적기(experience building phase)의 완료 후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Review of the BWM Convention based on data gathered in the experience building phase'이라는 신규 작업항목을 승인하였음.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 또한, 위원회는 'Urgent measures emanating from issues identified during the experience building phase of the BWM Convention'이라는 신규 작업항목을 추가로 승인 하였음.

.2 BWM 협약에 따른 선원 교육모델의 개발

- 동 제안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가 있었던 반면, 이는 평형수 관리에 관련된 선원훈련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모델코스의 개발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Development of training provisions for seafarers related to the BWM Convention'이라는 신규 작업항목을 승인하였음.

.3 냉매로서 Brine을 사용하는 원양어선에 대한 BWM 협약의 적용에 관한 통일해석 또는 지침 개발

- 냉매로 활용되는 Brine은 BWM 협약의 평형수의 정의에 부합하는 평형수가 아니라는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동 건에 대한 신규작업항목은 불요한 것에 동의하였음.

1.11 선주 및 조선소 고려사항

- BWM 협약적용 대상 모든 선박들은 협약발효 후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IOPP 정기검사 시까지 D-2 요건의 준수를 위한 BWMS의 탑재가 요구되며, 다음의 사항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전 IOPP 정기검사가 2014년 9월 8일에서 2017년 9월 7일 사이에 완료된 선박들에 한하여, 2017년 9월 8일과 2019년 9월 7일 사이에 IOPP 정기검사가 완료되는 경우(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는 동 정기검사가 BWMS의 탑재 시일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증서조화제도(Harmonized System of Survey and Certification, HSSC)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5년 미만의 유효기간이 지정된 IOPP 협약증서를 소지한 선박들은 이전 IOPP 최초 또는 정기검사가 2014년 9월 8일 및 2017년 9월 7일 사이에 완료되었다 할 지라도 2017년 9월 8일 및 2019년 9월 7일 사이에 협약의 발효 후 첫 번째 IOPP 정기검사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MARPOL Annex I의 10.3규칙에 따라 해당 검사 수행 후 최초발행일로부터 5년 후의 유효기간을 가진 IOPP 증서로 재발급이 가능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전 IOPP 정기검사가 2012년 9월 8일에서 2014년 9월 7일 사이에 완료된 선박들에 한하여, 협약의 발효일자 후 첫 번째 IOPP 정기검사가 2019년 9월 8일 전에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BWMS 탑재 시일은 협약의 발효일자 후의 두 번째 IOPP 정기검사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3 협약의 발효일 전에 건조된 선박들이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2019년 9월 8일 이후에 인도되는 경우, 선박의 인도시점에 수행되는 최초검사는 협약의 발효일 후 첫 번째 IOPP 정기검사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검사가 BWMS 탑재의 지정일이 되어야 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USCG BWM 관련 규정의 연장신청은 특정선박의 준수기일 지정날짜에 근거하여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의 기술정보(2017-ETC-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장신청은 각 선박별 BWM 설치 준수일 12개월에서 16개월 전에 USCG로 제출되어야 하며, BWMS의 설치 준수일 12개월 미만 전에 제출되는 연장신청은 거절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USCG 형식승인을 득한 장비의 이용가능성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gmix.uscg.mil/Equipment/EquipmentSearch.aspx>

2. 대기오염 및 선박에너지 효율규정

2.1 2020년 0.5% 황 함유량 요건의 이행에 관한 지침서 개발에 대하여 MARPOL 부속서 6의 14.1.3규칙의 일관된 이행에 관한 회기간 작업반 결과

- MEPC 70차는 0.5% 황 함유량을 지닌 연료유의 이행시기를 2020년 1월 1일로 결정하였으며, 위원회는 0.5% 황 함유량 요건의 만족을 위한 HFO 혼합이 연료유의 안정성, 점도 및 적합성 등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지닐 수 있음에 주목하고, 0.5% 황 함유량 요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을 PPR 전문위원회에서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음.

- 동 논의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7월 회기간 작업반이 개최되었으며, 다음의 주요한 결과 사항들이 MEPC 73차의 승인 및 고려를 위하여 제출되었음:

.1 선박이행계획서(Ship Implementation Plan)의 개발에 관한 지침: 회기간 작업반은 MARPOL 부속서 6의 0.5% 황 함유량 요건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선박이행계획서의 개발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MEPC 73차는 동 지침서의 MEPC 회람문서 초안에 'practical and pragmatic approach by port State control authorities'에 관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및 'This Guidance expires on 1 January 2020'을 언급하는 문구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받았음.

.2 저유황유 사용에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 MSC 100차는 저유황유 사용에 관련된 안전상의 영향성에 관한 회기간 작업반의 결과를 고려하도록 요청받았음.

- 선박이행계획서와 관련하여, MEPC 73차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후 지침서 초안을 승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인하였음:

.1 'practical and pragmatic approach by port State control authorities' 참조사항을 추가하지 않기로 합의;

.2 지침서의 만료일자를 언급하는 관련문구('This Guidance expires on 1 January 2020')를 삭제하기로 결정.

- **0.5% 황 함유량 이행의 경험축적기(Experience Building Phase)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양분화된 장시간의 논의가 있었음;

.1 문서 제안자들은 동 제안이 MARPOL 부속서 6의 18.2.1에서 18.2.5규칙에 언급된 조항들에 집중하면서, 0.5% 황 함유량 요건 및 이의 이행시기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 문서 제안자들은 동 제안이 요건의 완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규정의 일관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투명성을 찾는 데 의의를 두었음;

.2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안전 및 연료유 품질의 문제 및 적합한 연료유의 이용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3 제안된 경험축적기(EBP)가 BWM 협약과 같이 관련조항들의 공식적인 재검토를 의미하며, 이는 협약이행의 지연을 초래하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및

.4 경험축적기(EBP)의 용어가 혼란을 초래하며, 이의 명확한 목적이 정의되어야 함; 쟁점은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세계적인 경험을 얻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임; 동 제안의 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의 범위가 MARPOL 부속서 6의 18규칙에 한정될 필요가 있음, 등

- **격렬한 논의 끝에, MEPC 73차는 경험축적기의 도입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문서제출자 및 타 당사국들에게 MARPOL 부속서 6의 18규칙의 이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특히 연료유 품질 및 적합연료유의 이용가능성 부재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차기 MEPC 74차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선주 및 선박운항자들이 새로운 연료유의 사용 및 운송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2020 준수 연료유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조기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동 건의 의견들에 주목하였음:

.1 동 제안은 과도기적 이행기간을 성공적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필수이므로 지지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들은 0.5% 황 함유량의 연료유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연료유도 보고되어야 함;

.2 적합연료유를 보고하는 것은 협약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이 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함; 및

.3 쟁점은 적합연료유가 미래에 이용 가능할 것인지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적합연료유가 현재 이용가능한지가 고려되어야 함 등.

- 논의 후, MEPC 73차는 MARPOL 부속서 6의 당사국들에게 자국 항만 및 터미널에 해당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되는 적합연료유의 이용가능성을 2020년 1월 1일 전에 GISIS MARPOL Annex VI module 에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MEPC.1/Circ.810(Reporting of availability of compliant fuel oil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8.1 of MARPOL Annex VI)을 승인하였음.

- 2.2 연료유의 품질 (회원국/항만국에 대한 모범실무지침)
- MEPC 71차는 기존 MEPC 67차에서 선내 사용목적의 연료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초안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통신작업반을 재개설함에 동의하였으며, MEPC 71차에서의 동건에 관한 의견들 및 MARPOL 부속서 6의 14.1.3 규칙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신규 작업에 대한 PPR 5차의 논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료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회원국/항만국에 대한 모범실무지침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음.
 - 회원국/항만국에 대한 모범실무지침에 대한 추가 검토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회기에서 이를 완료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고려하여, MEPC 73차는 MEPC 74차에서의 작업완료를 위하여 통신작업반 개설에 합의하였음.
- 2.3 연료유 품질 (연료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연료유 공급자의 모범실무지침)
- 제안된 모범실무지침의 13.2항에 식별된 95% 신뢰도에 관한 참조사항은 연료유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해결에 사용되며, MARPOL sample 검증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의도된 것을 주목하여, MEPC 73차는 13.2항에 언급된 95% 신뢰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경미한 문구수정을 작업을 거쳐 연료유 공급자에 대한 모범실무지침을 승인하였음.
- 2.4 Exhaust Gas Re-circulation의 Bleed-off water의 배출에 관한 2018 지침서
- MEPC 71차는 PPR 전문위원회로 MEPC 73차의 채택을 위하여 동 지침서의 초안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음.
 - MEPC 73차는 동 지침서를 채택하였으며, 동 지침서는 Bleed-off 배출설비를 갖춘 EGR을 탑재한 선박용 디젤기관으로 2019년 6월 1일 이후에 첫 번째로 발행되는 EIAPP 증서분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함.
- 2.5 NOx Technical Code 2008에 따른 SCR 시스템에 대한 검증요건 개정
- MEPC 71차는 PPR 전문위원회로 Scheme A와 Scheme B를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NOx Technical Code 2008에 따른 SCR 검증요건의 개정안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음.
 - MEPC 73차는 동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Scheme B'가 NOx Technical Code 2008 및 관련 지침서상에 정의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Scheme B' 대신 'the procedure not involving the testing for the combined engine/NOx-reducing device on a test bed'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 2.6 감축률 2단계 이후의 EEDI 검토에 관한 통신작업반 중간보고
- MEPC 71차는 감축률 2단계 이후의 EEDI 규정의 이행에 관련된 기술개발 현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통신작업반 개설에 동의하였음. 위원회는 통신작업반에게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고 중간보고서를 MEPC 73차로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음:
 - .1 EEDI 규정의 에너지 효율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현황 및 향후의 가능한 EEDI 감축률을 고려할 것;
 - .2 대빙선박에 대한 보정계수가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할 것, 만약 개정되어야 한다면, EEDI 계산을 위한 2014 지침서 개정초안을 개발할 것;
 - .3 대빙선박의 기준선에 여유(Margin)가 주어져야 하는지를 고려할 것;
 - .4 IA Super 등급이상의 대빙선박을 어떻게 정의하고 EEDI 규정에서 제외시킬 것인지를 고려할 것;
 - .5 MEPC 73차로 EEDI 감축 3단계의 감축률 및 이행시기를 권고할 것; 및
 - .6 감축률 및 이행시기와 함께, EEDI 감축 4단계 도입에 대하여 고려할 것
 - 통신작업반은 EEDI 감축 단계의 감축률과 이행시기를 다음과 같이 권고함:
 - .1 로로화물선 및 로로여객선의 이행시기를 2025년으로 유지;
 - .2 컨테이너 선박의 감축 3단계를 2022년으로 조정;
 - .3 벌크 및 탱커선의 이행시기를 2025년으로 유지;
 - .4 타 선종의 감축 3단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없음; 및
 - .5 감축률은 모든 선종 30%를 유지
 - 통신작업반은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권고하였음:
 - .1 대빙선박의 기준선에 대한 여유(Margin);
 - .2 대빙선박의 보정계수; 및
 - .3 IA Super 등급 이상의 대빙선박에 대한 정의
 - **논의 후, MEPC 73차는 다음과 같이 EEDI phase 3 요건의 시작년도와 감축률에 대하여 원칙상 동의하였음:**

선종	현행의 감축률 3 단계	제안된 감축률 3단계
벌크선	2025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10,000 – 20,000 DWT)	2025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10,000 – 20,000 DWT)
가스케리어	2025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2,000 – 10,000 DWT)	[2022] 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2,000 – 10,000 DWT)
탱커	2025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4,000 – 20,000 DWT)	2025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4,000 – 20,000 DWT)
컨테이너	2025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	2022 년 시작, 감축률 40% 또는 0-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30% (10,000 – 15,000 DWT)	40% (10,000 – 15,000 DWT)
일반화물선	2025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3,000 – 15,000 DWT)	2022 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3,000 – 15,000 DWT)
냉동운반선	2025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3,000 – 5,000 DWT)	[2022] 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3,000 – 5,000 DWT)
겸용선	2025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4,000 – 20,000 DWT)	[2022] 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4,000 – 20,000 DWT)
LNG 선	2025년 시작, 감축률 30% (10,000 DWT and above)	[2022] 년 시작, 감축률 30% (10,000 DWT and above)
로로 화물선 (차량)	2025년 시작, 감축률 30% (10,000 DWT and above)	2025년 시작, 감축률 30% (10,000 DWT and above)
로로 화물선	2025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1,000 – 2,000 DWT)	2025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1,000 – 2,000 DWT)
로로 여객선	2025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250 – 1,000 DWT)	2025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250 – 1,000 DWT)
비전통추진 방식의 크루즈 여객선	2025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25,000 – 85,000 GT)	[2022] 년 시작, 감축률 30% 또는 0-30% (25,000 – 85,000 GT)

- 탱커, 컨테이너 및 아직 결정되지 타 선종들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다음 MEPC 74차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며, 그 후 MEPC 75차의 채택을 위한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2.7 최소추진출력에 관련된 축 출력(shaft power) 제한에 관한 제안된 선택사항

- MEPC 70차는 최소 추진출력에 관한 SHOPERA 및 JASNAOE 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를 검토한 반면, 하기와 같은 의견들을 고려하여 동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 및 동 지침서의 개정안이 MEPC 71차로 제출될 때까지 이에 관한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함:

- 1 선박이 일반적인 운항 중에 맞이하게 되는 해상상태는 최소추진 출력에 관한 2013 지침서에 언급된 해상상태보다 더 엄격함;
- 2 황천 상태를 Beaufort Scale 9 및 10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선박들은 EEDI 요건을 만족할 수 없을 것임;
- 3 IACS Recommendation 34는 Beaufort Scale 8이상의 해상상태에 대한 선박의 설계사항을 반영하지만, 실제 Beaufort Scale 8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동 지침서의 개정안이 MEPC 71차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개정안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므로 MEPC 71차에서 개정된 지침서를 확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EEDI Phase 3 검토와 연계하여 환경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함. 논의 후, MEPC 71차는 제안된 지침서 개정안이 완료될 정도로 기술적으로 완벽하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2013 최소추진출력에 관한 잠정치침서를 감축률 2단계까지 연장하여 적용함에 동의함.

- MEPC 73차는 이의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다음의 제안사항을 고려하였음:

.1 최소 추진출력과 EEDI 규정들 사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축 추력 제한 (shaft power limitation)을 허용할 것; 및

.2 비영구적인 추력제한을 허용함으로써, 최대 축 추력은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논의 중, MEPC 73차는 실제 이행에 관한 우려, 특히 언제 예비출력의 사용이 적절하며 허용되어야 하는지 및 예비출력의 사용이 허용될 경우, MARPOL 부속서 6장의 NOx EIAPP 검증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에 대하여 주목하였음.

- 논의 후, MEPC 73차는 동 제안사항과 함께 최소추진출력에 관한 2013 지침서를 다음회기에 추가로 검토함에 동의하였음.

2.8 대빙선박의 EEDI 규정에 관한 MARPOL Annex VI 개정안의 승인

- MEPC 73차는, 대빙등급 선박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저감장치 적용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대빙등급 선박에 대한 EEDI의 적용의 면제를 고려한 MARPOL Annex VI의 19.3규칙의 개정초안을 승인하였음. 동 개정안은 기존 면제대상 '쇄빙능력을 지닌 화물선(cargo ships having ice-breaking capability)'을 'Polar Code에 정의된 Category A 선박(category A ships as defined in the Polar Code)'으로 대체함. Category A 선박은 Polar Code상 가장 상위 등급의 대빙구조 선박이며, 'Polar Code'의 새로운 정의가 MARPOL Annex VI의 2규칙으로 추가되었음.

2.9 EEDI의 검사 및 증서발급에 관한 지침서의 최신화

- MEPC 73차는 EEDI의 검사 및 증서발급에 관한 개정된 지침서를 채택하였으며, 풍속분 석표, 모든 방향에서의 파도보정, 속력 시운전 횟수 관련 'Iterative' 방법, 수온과 염도 증가에 의한 저항 증가 관련 roughness allowance 추가 및 천수 보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2.10 대빙등급 선박에 관련된 2014 EEDI 계산지침서의 개정안

- 대빙선박의 보정계수(fi)와 관련하여, MEPC 71차는 대빙선박들에 대한 출력보정계수(fj) 또한 개정되어야 함에 동의하였고, 이의 작업을 통신작업반으로 지시하였음.

- MEPC 73차는 대빙등급 선박에 대한 개정된 용량(fi) 및 출력(fj) 보정계수, 및 EEDI 검증에 있어서 동일한 선형 및 선체체크기를 지니는 선박들에 대한 개방구역(open water) 운항에 근거하여 정의되고 건조된 대빙등급 선박에 대한 대체 계산방법을 포함하는 2014 EEDI 계산지침서의 개정안을 채택하였음.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3. 선박의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 및 운항적 추가조치 (Data Collection System)

3.1 규정의 일반

- GT 5,0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연료 소모량 및 운송일(transport work)을 대체하는 추가자료의 수집을 요구하는 강제요건인 MARPOL Annex VI의 개정안이 2018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었음. 주관청은 2018년 말까지 각 선박의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에 데이터수집시스템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함. 선사는 요구되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선박의 주관청으로 보고해야 함. 주관청 또는 위임 받은 RO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증 받은 후, 선박에는 적합 확인서(Statement of Compliance)가 발급될 예정임. 이후, 주관청은 이 정보를 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보고해야 함

3.2 IMO 선박연료소모량 데이터베이스

- MEPC 73차는 사무국에 의하여 취해진 다음의 사항을 주목하였음:

- 1 IMO 사무국은 불일치 하는 경우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하여 MARPOL 부속서 6의 22규칙에 해당되는 선박들의 목록을 주관청으로 보냄으로써 새로운 통신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최신화하였음;
- 2 상기 목록은 선박의 주관청, 5,000 GT 이상의 선박들의 톤수 및 운항중/신조중인 선박들의 상태들에 정보를 활용하여 개발되었음; 및
- 3 MARPOL 부속서 6의 당사국들에게 이들 정부를 대신하여 연료소모량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위임받은 인정기관이 사무국으로 연락을 취하여 웹 계정 개설을 할 것을 독려함.

3.3 Data Collection System의 이행에 관한 제안된 통일해석

- MEPC 73차는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 LNG 선박의 Boil-Off Gas 및 '쉽게 접근할 수 있는(readily accessible) 자료'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통일해석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

- 1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은 SEEMP 및 준수사실 확인서(confirmation of compliance)를 비치해야 함;
- 2 선박의 추진 또는 운항목적으로 소모된 Boil-Off Gas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며, 선박의 연료소모량 Data Collection System의 연료로서 보고되어야 함; 및
- 3 수집된 자료가 회사로부터 제공이 가능하다면, 선박에 보관될 것이 요구되지 않음.

3.4 MEPC 73차는 Data Collection System의 자발적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고려하였으며, 다음의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권고사항에 주목하였음:

- .1 MARPOL 부속서 6의 22A 규칙에 해당되는 '기타'선종에 대한 보고요건의 명확화;
 - IMO 선박연료 소모량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보고할 때, 기타 및 특정 선종에 대한 기입항목이 요청됨.
- .2 '기타'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배출계수(emission factor) 식별의 어려움; 및
 - 연료유 공급자가 연료유의 배출계수 C_f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016 SEEMP 개발지침서의 부록 2의 4번 표에 언급된 배출계수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함.
- .3 개별 데이터 보고양식의 다양성 검증에 따른 어려움 및 기록 및 보고시의 오기
 - 보고될 자료의 디지털화는 선사에서 판단할 문제임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동 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함.

4.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개정 및 채택

- 4.1 2020년 0.5% 황 함유량 요건의 이행에 관련된 고유황유 선적금지 관련 MARPOL 부속서 6의 개정안 채택
 - MEPC 72차는 선박의 추진목적으로 사용되는 연료유에 대한 미준수 연료유의 선적금지에 관한 MARPOL Annex VI의 14규칙 및 IAPP 증서의 관련 추록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MEPC 73차의 채택을 위하여 제출됨.
 - 동 개정안은 MARPOL Annex VI의 4.1규칙에 따른 동등물(equivalent) 규정에 따른 장비(Exhaust Gas Cleaning System)를 탑재한 선박들에 대한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논의 후, MEPC 73차는 MARPOL 부속서 6의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2020년 3월 1일 이후로 발효될 예정임:

5.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Green House Gas) 감축

- 5.1 MEPC 72차는 장시간의 논의 및 협상 끝에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초기 IMO 전략에 관한 결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동 전략은 2023년에 단기, 중기, 장기 전략 및 이행일정과 함께 개정된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 채택될 예정임.
- 5.2 IMO 초기전략은 다음으로 구성됨:
 1. 도입, 전후사정 및 초기전략 목표;
 2. 비전;
 3. 의욕수준/적용원칙;
 4. 가능한 타임라인을 포함한 단,중,장기 조치 목록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 5. 장애요소 및 지원조치들;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R&D;
- 6. 개정된 전략개발을 위한 후속활동

5.3 MEPC 73차는 사무국으로부터 다음의 계획과 함께 제안된 제4차 IMO GHG Study의 준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2018년 10월	MEPC 73차는 제4차 IMO 온실가스 연구의 초안을 검토 및 위임사항 (TOR)을 개발하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안내함
2019년 5월	MEPC 74차는 MEPC 73차에서 개발한 위임사항(TOR)에 동의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입찰권고 승인함
2019년 6월	입찰 제출 기한
2019년 7월	평가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입찰 서류 제출
2019년 9월	입찰평가서 사무국 제출 (운영위원 -> 사무국)
2019년 10월	'Value for Money(가격에 합당한 가치)'원칙에 의거하여 계약 체결
2020년 봄	MEPC 75차, 중간보고서 검토
2020년 가을	MEPC 76차, 최종보고서 승인여부 판단

5.4 IMO 초기전략에 대한 후속조치 (Follow-up actions to the Initial IMO Strategy)

- MEPC 73차는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MO 초기전략(Res.MEPC.304(72))을 이행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의 일정을 지닌 후속조치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으며, 단기, 중기 및 장기조치들을 고려하여 어떻게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려하였음:

- 1 현행의 IMO 규정하에 언급되고 고려될 수 있는 단기조치(Group A) (EEDI, SEEMP 및 기술협력촉진 등에 따라 현행의 에너지효율 규정체계의 추가 개선);
- 2 현재 적용 중이 아니며, 데이터 분석을 조건으로 한 단기조치(Group B) (IMO 연료소모량 데이터 수집시스템에 따른 데이터 분석);
- 3 현재 적용 중이 아니며, 데이터 분석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단기조치 (Group C) (국가행동계획 지침, 연료에 대한 생애주기 GHG/탄소집약도 지침, 연구 및 개발)
- 4 장기조치 및 식별된 장벽을 다루기 위한 활동;
 - 단기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사항들이 차기 MEPC 74차에서 추가 논의될 것이며, 중기 및 장기조치는 MEPC 74차 및 MEPC 75차에서 논의될 예정임.
- 5 국가에 대한 영향;
 - MEPC 73차는 국가에 대한 영향의 평가절차 완료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MEPC 74차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무국에게 MEPC 74차로 현행의 영향성 평가에 관련된 IMO 절차 (예, 특별민감해역(PSSAs) 및 배출통제해역(ECAs) 지정을 위한 신규작업항목 제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안에 관한 절차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6 4차 GHG Study

- MEPC 73차는 후속조치 프로그램의 하나의 활동분야로 포함된 제4차 GHG Study를 위한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의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4차 GHG Study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들로부터 배출되는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에 대한 연구임. 위원회는 4차 GHG Study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Expert Workshop) 및 3차 GHG Study와 동일한 관행에 따른 위원추천과 함께 4차 GHG Study를 위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설립에 추가로 동의하였음.

.7 역량강화, 기술협력, 연구 및 개발

- 후속조치 프로그램의 하나의 활동분야로 추가되었으며, 이는 영향평가 지원 및 조치의 이행지원을 포함하여 각 조치들의 개발 및 이행을 의미함.

.8 개정된 전략의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

- MARPOL 부속서 6의 22A 규칙에 따른 선박연료소모 데이터 수집 후에, IMO DCS 자료 및 기타 관련정보를 고려한 IMO 초기전략 수정의 착수 및 개정된 IMO 전략의 채택을 의미함.

5.5 IMO 초기전략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은 일정표에 따라 논의될 예정임:

Streams of activity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EPC 73	MEPC 74	MEPC 75	MEPC 76	MEPC 77	MEPC 78	MEPC 79	MEPC 80
Candidate short-term measures (Group A) that can be considered and addressed under existing IMO instruments²	Invite concrete proposals	Consideration of proposals	Consideration and decisions on candidate short-term measures that can be considered and addressed under existing IMO instruments e.g. further improvement of the existing energy efficiency framework with a focus on EEDI and SEEMP, ITCP ³					
Candidate short-term measures (Group B) that are not work in progress and are subject to data analysis	Invite concrete proposals	Consideration of proposals	Consideration and decisions on candidate short-term measures that are not work in progress and are subject to data analysis, consistent with the Roadmap ³ Data analysis, in particular from IMO Fuel Oil Consumption DCS					
Candidate short-term measures (Group C) that are not work in progress and are not subject to data analysis	Invite concrete proposals	Consideration of proposals	Consideration and decisions on candidate short-term measures that are not work in progress and are not subject to data analysis e.g. National Action Plans guidelines, lifecycle GHG/carbon intensity guidelines for fuels, research and development ³					
Candidate mid-/long-term measures and action to address the identified barriers	Invite concrete proposals	Consideration of proposals including identification of barriers and action to address	Progress made and timelines agreed on the development of mid- and long-term measures					
Impacts on States⁴	Invite concrete proposals	Finalization of procedure	Measure-specific impact assessment, as appropriate, consistent with the Initial Strategy, in particular paragraphs 4.10 to 4.13					
Fourth IMO GHG Study	Scope	Initiation of the Study	Progress report	Final report				
Capacity-building, technical coope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ctions including support for assessment of impacts and support for implementation of measures							
Follow-up actions towards the development of the revised Strategy		Ship fuel oil consumption data collection pursuant to regulation 22A of MARPOL Annex VI (DCS)	Initiation of revision of the Initial Strategy taking into account IMO DCS data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Adoption of revised Strategy		

² Includes ongoing work pursuant to regulation 21.6 of MARPOL Annex VI.
³ "In aiming for early action, the timeline for short-term measures should prioritize potential early measures that the Organization could develop, while recognizing those already adopted, including MARPOL Annex VI requirements relevant for climate change, with a view to achieve further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shipping before 2023" (paragraph 4.2 of the Initial Strategy).
⁴ Assessment of impacts on States to be undertake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to be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6 선박기인 해양플라스틱 (Marine Plastic Litter)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 6.1 해양플라스틱이 해양생물, 생물다양성, 인류건강, 관광, 어업 및 해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해양플라스틱의 낮은 생분해성 및 인류 먹이사슬로의 진입 경향 등을 고려하여, MEPC 72차는 새로운 작업계획을 고려하였고, 2025년까지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상당히 줄이기 위한 목적의 신규작업항목을 승인하였음.
- 6.2 MEPC 73차는 선박기인 활동을 통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대형플라스틱(macro-plastic: 비닐봉투, 물병, 어구 등) 및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을 방지하기 위한 Action Plan을 포함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였음.
- 6.3 Action Plan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음:
- 1 어선으로부터 발생되고 회수되는 해양플라스틱의 감소
 - 길이 24미터 이상의 모든 어선에 대하여 IMO 선박식별번호 강제화 및 어구에 선박식별번호 입력 등
 - 2 해운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의 감소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들에 대하여 플래카드, 폐기물관리계획서 및 폐기물 기록부 강제화 및 유실컨테이너의 정형화된 선언서의 강제시스템 구축 등
 - 3 항만수용시설 및 해양플라스틱 감소의 처리과정에 대한 효율성 개선
 - 재사용, 재활용 및 항만수용시설에 관계된 비용체계의 이행을 위하여, 어구를 포함한 선박으로부터 발생된 플라스틱에 대한 분리된 폐기물 수집 위한 항만수용시설에 대한 요건의 고려 등
 - 4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강화된 대중의 인식, 교육 및 선원 훈련
 -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을 언급하기 위한 IMO의 작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의 고려 등
 - 5 해양플라스틱으로의 선박의 기여에 대한 개선된 이해
 - 우발적인 어구의 손실 및 배출에 대한 보고자료를 포함하기 위하여 MARPOL Annex V의 10.6 규칙에 언급된 보고요건의 확장에 대한 고려 등
 - 6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에 관계된 규정체계의 개선된 이해
 - 해양플라스틱의 대한 규정의 차이를 분석을 목적으로 규정체계의 개발을 고려 등
 - 7 강화된 국제협력
 -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UNEA(United National Environment Agency)가 이용 가능한 정보의 개발 등
 - 8 목표된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 IMO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활동 측면에서의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을 다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루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련된 이행관련 사항들의 언급, 등

- 6.4 중수(grey water)와 관련하여, MEPC 73차는 중수를 미세플라스틱과 연계하여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중수뿐만 아니라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향후의 결정을 위하여 추가의 연구가 필요함에 동의하였음. 결과적으로 MEPC 73차는 회원국 및 국제기구에게 미세플라스틱을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향후 MEPC로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7 PPR 전문위원회의 결정사항

- 7.1 전자기록부에 관련된 MARPOL Annex I, II, V 및 VI, 및 NOx Technical Code 개정안의 승인
- PPR 5차는 전자기록부의 사용을 허용하는 MARPOL 협약의 개정안 및 관련 지침서 초안을 준비하였으며, MEPC 73차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였음. 동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1 MARPOL Annex I – 기름기록부 Part I (기관구역의 작업) 및 Part II (화물/평형수 작업);
 - .2 MARPOL Annex II – 유해액체물질(NLS: Noxious Liquid Substance) 화물기록부;
 - .3 MARPOL Annex V – 폐기물 기록부;
 - .4 MARPOL Annex VI – 오존층파괴물질 기록부, ECA 지역 진입시의 연료유 전환 및 NOx Code Tier 기준에 대한 선박용 디젤기관의 on/off 상태에 대한 로그북; 및
 - .5 NOx Technical Code – 엔진파라미터 기록부
 - 논의 중, 일부 회원국들은 비강제 지침서를 통하여 승인받은 전자기록부의 사용은 현행 MARPOL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드카피 형태 기록부와 동일한 접근성, 일관성, 명확성, 신뢰성, 완전성 및 책임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MARPOL 협약 개정안의 승인을 강하게 반대하였음.
 - MEPC 73차는 선박용 기기들에 대한 적합한 IEC 기준을 적용한 전자기록부 하드웨어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음. 또한, 위원회는 MARPOL Annex VI의 12규칙(오존층 파괴물질 기록부)에 따라 이미 승인받고 설치된 장비의 현재상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도 결정하지 못하였음.
 - MARPOL 협약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사용에 관한 지침서 초안이 MEPC 73차에서 원칙적으로 승인되었으며, MEPC 74차에서 상기 언급한 MARPOL 협약의 개정안과 함께 채택될 예정임.
- 7.2 부유식 생산, 저장 및 양하시설(FPSOs) 및 부유식 저장설비(FSUs)에 관한 MARPOL Annex I 요건들의 적용에 대한 2018 지침서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 MEPC 73차는, PPR 5차에서 개발한 부유식 생산, 저장 및 양하시설 및 부유식 저장설비에 관한 MARPOL Annex I 요건들의 적용에 대한 지침서 초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선내에 선장이 없는 FPSOs 및 FSUs를 위하여 지침서 내에 언급된 문구 중 'master'를 'master or person in charge'로 개정함에 동의하였음.

7.3 고점도(High viscosity) 및/또는 고용해점(high melting point)을 지닌 잔류성 부유물질(persistent floating products)의 화물잔류물 및 탱크 세정수에 관한 MARPOL Annex II의 개정안

- MEPC 73차는 식물성 기름 및 파라핀류와 같은 고점도의 잔류성 부유물질의 화물에 대하여 지정된 특별해역 내(the North West European, the Baltic Sea, the Western European, the Norwegian Sea)에서 예비세정(pre-wash)을 요구하는 MARPOL Annex II의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승인된 MEPC.2/Circular는 동 개정안에 따라 규제를 받는 특정 식물성 기름 및 왁스류 등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며, 예비세정 중에 발생한 잔류물은 항만수용시설로 배출되어야 함. 이후에 탱크 내로 주입되는 세정수는 현행 MARPOL Annex II의 13.2규칙에 따른 배출 기준에 따라서 배출되어야 함.

- 동 개정안은 MEPC 74차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7.4 고에너지(Energy-rich) 연료 및 혼합물의 운송에 대한 지침서의 승인

- MEPC 73차는 고에너지(Energy-rich) 연료 및 혼합물의 운송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는 MEPC 회람문서를 승인하였으며, MARPOL Annex II 및 IBC Code에 따른 액체물질의 잠정 분류에 관한 MEPC.2/Circular의 부록 12로 동 물질들의 순차적인 추가를 지지하였음.

- 동 지침서는 고에너지 연료 및 MARPOL Annex I 및 II에 해당되는 석유류 기름 및 바이오 연료와의 혼합물을 운송할 때 선박들에게 적용되며, 해당화물들이 적합한 부속서 요건들의 적용에 따라서 선적되어야 함을 보장하기 위함임.

8 기타사항

8.1 해운으로부터의 수중소음

- MEPC 73차는 해운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중소음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지속되는 노력에 관한 정보를 주목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들은 2019년 1월 30일에서 2월 1일까지 캐나다에 의하여 주최되는 워크샵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으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 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음.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3 (22 - 26 October 2018)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1-2019

- 8.2 선내에 사용되는 소화 폼(fire-fighting foam) 내의 perfluorooctanesulphonic acid (PFOS) 및 기타 계면활성제(surfactants)의 사용
- MEPC 73차는 선내에 사용되는 소화 폼 내에 인류건강 및 해양환경으로 유해할 것으로 고려되는 PFOS 및 기타 계면활성제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목하였으며, 회원국 및 국제기구로 동 건에 관한 추가 의견을 해사안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위원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끝-

P.I.C:

Kim Hoi-Jun / Senior surveyor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Tel: +82 70 8799 8330

Fax: +82 70 8799 8319

E-mail: convention@krs.co.kr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